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 ▶ COVER STORY: 해외여행자 휴대품통관... 1
- ▶ FTA NEWS: 원산지증명방식과 수출자의 책임 2
- ▶ VOICES FROM THE FIELDS: 전기자동차산업과 녹색성장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¹³⁾ 4
- ▶ WHERE IS GRACE CHANG?: 다시 새로운 꿈을 꾸며 6
- ▶ ABOUT WRITERS 6

바야흐로 하계방학 및 휴가 성수기에 따른 가족여행 시즌이 돌아왔다. 관세청은 이에 발맞추어 해외 호화사치 여행자 등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였다. 해외여행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휴대품통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해외여행자 휴대품통관

■ 출국시 휴대품통관

1. 휴대물품반출

카메라·귀금속 등의 귀중품·고가품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와야 할 경우에는 출국 전 세관출국신고대에 신고 해야 한다. 이때 받은 '휴대물품반출신고서'가 있어야 입국 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 신고방법

출국게이트 1~4 로 들어가면 세관출국신고대가 있다. 세관공무원에게 여권과 신고할 물품을 보여주고 확인증(휴대반출증)을 받아두었다가, 입국시 제출한다.

2. 외환신고

미화 \$10,000 를 초과하는 여행경비를 휴대한 경우에는 세관출국신고대에 신고 해야 한다.

3. 면세품 구매시 유의사항

출국 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것을 조건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총 한도액은 미화 \$3,000 이다. 다만,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면세범위는 미화 \$400 까지이며,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구입물품을 포함하여 \$400 초과시에는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 입국시 휴대품통관

1.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제출

해외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내에서 배부 받은 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의 소지유무 및 구매가격 등을 기재한 후, 입국현장 직원에게 제출한다.

2. 면세통관

- (1) 1 인당 면세금액
해외에서 무상 취득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이다.
- (2) 무조건 면세
아래 물품은 1 인당 면세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조건 면세이다.

품목	상 세 내 용	
주류	· 1L, \$400 이하 1 병	만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 제외
담배	· 궐련-200 개비 · 엽궐련-50 개비 · 기타담배-250g	
향수	· 60ml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 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으로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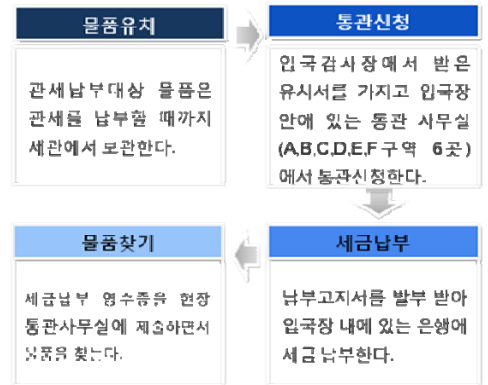
<무조건 면세>

여행자휴대품의 인정범위

- (1) 여행사 개인용이 사가사용품
- (2) 선불용으로 기념하고 인정되는 수형 또는 가치가 높음
- (3) 여행사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여류, 화장품 등이 신발용품 및 신발정식용품
- (4) 비기주사인 여행사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고 세관장이 인정 하는 직업용구
- (5) 기타 여행사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3. 과세통관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통관신청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다.



4. 가산세 징수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 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032-722-4441) 또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영 실

yspark@customsservice.co.kr

원산지증명방식과 수출자의 책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에는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발급은 협정에서 정한 발급기관(예: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상공회의소)이 수출자 등으로부터 발급신청을 받아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며, 자율발급은 수출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정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하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원산지검증시 수출자 등의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FTA 별 원산지증명방식의 비교

원산지증명방식은 FTA 별로 해당국의 행정관행과 관련제도 등에 따라 상이하다. 미주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지역의 국가들은 기관발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FTA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자율발급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EU 도 과거에는 기관발급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수출건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이 자율발급을 할 수 있는 제한적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다.

외국의 FTA 사례를 본다면 NAFTA 와 미·싱가포르 FTA, 미·호주 FTA, 캐나다·칠레 FTA, 싱가포르·뉴질랜드 FTA 등은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멕시코 FTA 와 EU·칠레 FTA 등은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다.

□ 원산지증명방식의 장단점 비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촉진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입각한다면 발급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며, 발급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자율발급이 바람직할 것이나 허위증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관발급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장점	기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한 후 발급함으로써 증명서에 대한 공신력 제고	발급절차가 신속·편리함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 미발생 통관절차 간소화
단점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중복 절차의 복잡성 발급시간과 비용의 발생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가능성

□ 원산지증명방식과 수출자 등의 책임 문제
기관발급방식은 기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해 담보를 해 준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구분	발급방식	발급주체	발급양식	유효기간
한·칠레	자율발급	수출자	양국간 통일증명양식	2년
한·싱가포르	기관발급	싱가포르: 세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국가별 증명양식	1년
한·ASEAN	기관발급	ASEAN: 각국 정부기관 ⁽¹⁾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협정상 규정양식	6개월
한·EFTA	자율발급	수출자	송품장 신고양식	1년
한·인도	기관발급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협정상 규정양식	1년
한·미국	자율발급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정형양식 없음	4년
한·EU	제한적 자율발급	수출자	송품장 신고양식	1년

<FTA 별 원산지증명방식의 비교>

대부분이다. 과연 발급기관이 원산지의 판정의 허위·오류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²⁾에 해당하면 현지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없이 수출자 등이 신청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의 충족 및 구비여부 확인만 하고 발급을 하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산지 검증시 검토되는 원산지판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결국 수출자, 생산자 등에게 귀결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반면에 자율발급방식의 경우 원산지 판정 및 발급과정에서 수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원산지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업체가 상당수이다.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의 원산지판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면책해주는가?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한·칠레 FTA 와 한·미 FTA⁽³⁾의 경우 원산지검증시 수입국 세관의 직접검증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EFTA FTA 의 경우 수출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시 수입국 세관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원산지 허위발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의 판정 및 발급과정에서 수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발급은 원산지판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수출자의 입증책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NAFTA 협정에서 FORD 자동차와 PIONEER 의 사례를 본다면 원산지판정의 입증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있는지 불문하고, 원산지판정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수출자 등이 부담한다. 따라서 수출자 등은 적용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원산지를 판정하고 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판정을 위한 기초서류를 5년간 보관⁽⁴⁾함으로써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1)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 통상부(Ministry of Trade), 라오스 - 상무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 세관(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 세관(Singapore of Customs), 베트남 - 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 Trade), 태국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2)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 조]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 등의 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한·미국 FTA 의 경우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섬유·의류상품에 대해서는 간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다.

(4) 수출신고필증,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거래 관련계약서, 원재료 생산 및 구입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출납·재고관리대장, 재료공급자 등으로부터 받은 원산지확인서류 등 원산지 판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대 규

dkchoi@customsservice.co.kr

입증이 미흡하여 벌금을 부과받거나 협정관세가 배제되어 추정받은 바 있다.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방식을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EU 의 원산지인증수출자 포함)으로 채택하고

전기자동차 산업과 녹색성장

녹색규제로서 시장과 기술의 패러다임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녹색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 그린 카 시장은 빠른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 중 녹색성장의 실체인 전기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넘어 급속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전기 자동차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전기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전망은 밝다.



'에너지와 환경'이란 글로벌 화두가 만든 '녹색'이라는 단어는 인류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모든 산업에서 수식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점점 강력해지는 녹색규제로서 시장과 기술의 패러다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것은 녹색과 성장이 필연적으로 연결 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정부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부처에서 녹색성장의 가치를 걸고 스마트그리드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 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 전지자동차로 대변되는 그린 카 시장은 이를 가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조속한 도입을 통한 빠른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중 전기자동차는 충전소 인프라 및 일회 충전 주행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가격 등으로 제도적 지원정책이 필수적인데 자동차 분야에서 현실화 되고 있는 녹색규제를 대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원정책을 마련하였고 최근 일본 미쓰비시와 도요타, 닛산, 미국 GM 및 테슬라 모터스, 중국 BYD, 유럽 등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에서 세계 기술 시장의 선점을 위해 전기자동차 생산을 선포하거나 양산을 시작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자동차 개발 경쟁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넘어 전기자동차 쪽으로 급속히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지난 10 월 8 일에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4 강을 위한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녹색의

비전을 성장 동력으로 구체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방안은 핵심 부품 기술개발지원, 법제도 정비, 시범생산 및 도로 운행 실증사업 지원, 보급지원 등을 포함하며 이는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의 조기 시장창출을 위한 시급성이 되어 향후 산업체들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기술 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기자동차 산업의 우리의 경쟁력의 전망은 밝다.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전기자동차의 파워트레인 기술은 오래된 기술이며 하이브리드자동차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특허 등 기술의 장벽이 높지 않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면은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배터리의 국산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BMW 나 GM 과 공동 개발하여 전지를 공급할 정도로 세계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며칠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LG 화학 미국 현지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 참여 한 의미는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확산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을 시사 하는 것이다.

또한 모터 및 구동 인버터, 컨버터 기술, 배터리 충전 시스템 기술은 조기 국산화가 가능한 수준이며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인프라도 세계 5 위권 내의 수준이다. 현재의 국내 전기자동차 기술은 선진국 대비 7-80%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 하에 국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들의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국산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경우 그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지정학적인 조건이 유리하다. 한국은 인구 밀집지역이 많으므로 환경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아서 충전 인프라 및 자동차 개발을 용도 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내수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해 기술 개발 및 산업이 단계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전기자동차의 실증사업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버스나 마을버스,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우선 도입하여 국내 시장을 형성함과 동시에 전기자동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바람직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의 실체인 전기자동차 산업의 세계 시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확산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이다. 활성화방안을 통해 시장의 선점 및 표준화를 선도 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들의 국산화 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의 세계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산업체, 학계, 연구계는 국내 취약분야인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배터리나 모터의 소재, 차체 경량화를 위한 차세대 금속 소재, 전력용 반도체 개발 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조보형

bhcho@snu.ac.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원산지표시대상 신규 지정물품 표시 지침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지난 6 월 28 일에 관세법 제 74 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따라서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한 변경 세번이 고시되었다. 이번에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은 CPU 소매용 세트와 반도체 웨이퍼 스크라이빙 기계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

① CPU(Central processing unit) 소매용 세트

Celeron IC-Fan heat sink 가 종이 case 에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Fan heat sink 는 방열판과 팬으로 구성된다. 본 물품은 종전에는 팬이 분류되는 제 8414.59-9000 호 였으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전자집적회로로 보아 제 8542.31 호에 분류 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이후 관세율이 8%에서 0%로 변경되었으며,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CPU)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소매용 세트물품으로써 CPU 가 제 8473 호인 물품의 경우 제 8473.30-9010 호로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② 반도체 웨이퍼 스크라이빙 기계(Full-Auto Senean Laser Scribing M/C)

발광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등의 제조공정시, 레이저로 사파이어 웨이퍼 내부를 Scribing 하는 기계로써 변경 전 HS 품목번호는 제 8486.20-9390 호로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중에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 기타 호(BASKET CODE)로 분류되어 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였다. 이번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이후에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 또는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가 분류되는 제 8486.20-9320 로 세번이 변경되었으며, WTO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0%의 관세율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변경고시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 표시 지침

지난달에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신규로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규정하기 위해 본 지침이 마련되었다.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은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등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ing), 스티커(sticker) 및 꼬리표(tag)를 인정한다고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규 지정 물품 중에서 석재, 도자재 및 기타 철강제품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날인을 인정한다.

이 밖에 6801 호, 6802 호, 6806 호, 6809 호, 6906 호, 7019 호, 7307 호, 7325 호, 7326 호, 750 호, 7806 호, 7907 호, 8007 호 14 개 품목이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므로 본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시 원산지표시 유무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 51 조 내지 56 조에 규정되어 있는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음이 판명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탄력관세제도이다.

본 규칙은 2009 년 9 월 28 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경우 덤핑수입 지속 또는 재발과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부과 대상은 제 2831.10.1000 호 중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본 세번은 WTO 협정세율 대상으로 5.5%의 관세율이 적용 되나,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경우 12.25%~36.18%의 덤핑방지관세율이 본 규칙 공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 된다. 본 규칙은 다음달 2 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 월 중에 시행 될 예정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 유 진

yjseo@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⑬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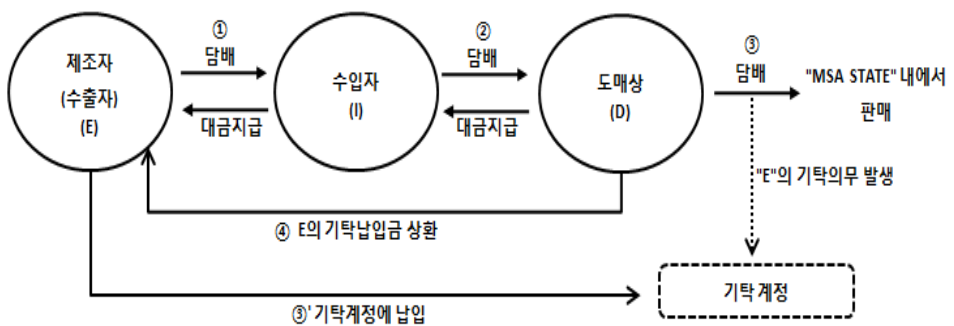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담배합의협약 기탁이행대금의 상환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HQ W563503 2008.10.02)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Proceed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사후귀속이익)*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의 5 호의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가산요소 중의 하나이다.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사후귀속이익의 해당여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또한, 쟁점의 상환금액 지급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관세법시행령(19 CFR)152.103(1)에서 "간접지급금액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또는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환금액의 지급은 E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이 아님. 또한 I는 E에게 상환대금 지급의무가 없음은 물론 상환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D와 어떠한 관계도 없음.

- 1998년 11월 미국의 담배회사는 1950년대 이후 46개 주정부("MSA STATES")에서 가난한 흡연자들의 치료와 보건지원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배상을 위해 "담배합의협약(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 MSA)"를 체결함.
- MSA에 따라 담배회사는 일정 금액을 MSA STATES에 지급하기로 함.
- MSA의 이행을 위해 각 주는 "기탁의무 조항(Escrow Statute)"을 마련하여 46개 주에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 1) MSA에 참여하여 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거나,
 - 2) MSA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25년간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관련 비용에 사용되도록 해야 함.
- MSA에 참여하지 않는 담배회사는 "NPM, (Non-Participating Manufacturer)"이라 하며, 주로 해외의 담배 제조(수출)자가 이에 해당함.

□ 거래사실(Facts)

- ① 해외의 NPM(E)는 I에게 담배를 판매하며, 거래가격에 기탁의무 이행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 ② I는 미국내 D에게 담배를 재판매함.
- ③ D는 MSA STATES 내에서 담배를 판매함. "기탁의무 조항"에 따라 D가 MSA STATES에서 담배를 판매한 해에 E의 기탁의무가 발생하며, 그 다음해 4월 15일까지 할당된 기탁금을 납입하여야 함. (예: 담배수입(2004년) → 도매상에게 담배 재판매(2005년) → MSA STATES에서 담배판매(2006년) → E의 기탁의무 발생(2007년))
- ④ E는 D의 MSA STATES 내 담배판매로 발생한 기탁의무 이행비용을 D에게 요구하며, D는 E에게 기탁의무 이행비용을 상환함.

- ⑤ E와 I, D는 모두 상호독립된 당사자임.
- ⑥ I는 판매세인자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를 D에게 판매하며, D는 판매세인자가 부착된 담배를 판매한다. 기탁이행의무는 판매세 인자가 붙은 담배에 대해서만 발생함.

□ 쟁점(Issue)

1. D가 E에게 지불하는 기탁의무 이행비용의 상환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근거 및 검토
 - (1) 관세법(19 U.S.C §1401a(b)(1))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함.
 - (2) 기탁의무 이행금의 상환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검토해야 함.
 - 가. 상환금액 지급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상환금액 지급이 사후귀속이익으로 실제지급가격의 가산요소인지 여부

2.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1) 관세법(19 U.S.C §1401a(b)(4)(A))에서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라고 규정함.
 - (2) 쟁점의 상환금액 지급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비록 상환금액의 지급이 E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었지만 상환금액의 지급은 I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D가 지급한 금액임.

3.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1) 관세법(19 U.S.C §1401a(b)(1)(E))에서 "수입 후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수입물품의 전매가 발생하고 수익금이 직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관련예규 : Ruling HRL 545035 (1995. 08. 23)]
- (2) 본 사안의 상환금액 지급은 다음을 근거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가. 기탁금액 상환의무는 D에게 있으며, I에게는 상환의무가 없음.
 - 나. 수입물품의 전매는 기탁금액 상환을 의도하고 있지 않음. 즉, 기탁금액 상환의 대상은 판매세인자가 부착된 담배인 것에 반해 수입물품은 판매세인자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임.
 - 다. 기탁의무는 수입을 한 뒤 수입행위와 관계없는 MSA STATES에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발생하는 의무임.

□ 결정(Holding)

D가 E에게 지불한 기탁의무 이행대금에 대한 상환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대 규
dkchoi@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다시 새로운 꿈을 꾸며...



장승희
대표 관세사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얘기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꿈을 얘기하지 말고 현재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 꿈은 젊은이들에게나 가당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 '혁신이란 꿈과 희망을 찾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란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과거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혁신하는 사람이 이기는 혁자생존(革者生存)의 시대'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주)신한인비스타가 드디어 기지개를 펴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기대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하여 많은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 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물류부문에서도 고객과 함께하는 신한이 되기 위한 푸른 꿈입니다.

이번 Cover Story 는 간편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출국 시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입국 시 면세통관대상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출국하시기 전에 한번 훑어 보시고 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또한 새로운 분야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게 펼쳐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적 화두인 '녹색성장'과 '전기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의 조보형교수께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너지절약, 환경친화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전기자동차의 활성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기술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Global Mind 를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FTA 의 활용을 위하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지증명입니다. 다시 한번 각 FTA 별 원산지 증명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의 US Customs Valuation Ruling 은 미국의 '담배합의협약'이 해외의 담배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담배의 거래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대 같은 비는 그치고 초복과 함께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올해의 여름 휴가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산으로 가시든지 바다로 가시든지 아니면 조용해진 도시를 지키시든 이번 휴가기간엔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꿈을 통해 더 밝아진 모습 더 강해진 내면으로 돌아오시어 더욱 힘차게 발전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ABOUT WRITERS

COVER STORY -
해외여행자 휴대품통관

박영실 관세사
(ys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1 팀

FTA News- / US Rulings 연재
원산지증명방식과 수출자의 책임/
기탁이행대금의 상환금 과세포함 여부

최대규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미국공인회계사(AICPA)
- 원산지관리사 수석합격

Voices From The Fields-
전기자동차 산업과
녹색 성장

조보형 교수
(bhcho@snu.ac.kr)

PROFILE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교수
-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소장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변경 고시등

서유진 관세사
(yi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지사
- AEO T/F Team
- 2008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 (shinhan@customsservice.co.kr) 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중-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